

# 심 사 보 고 서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4
----------	-----

2022. 11. 30.(수)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22년 10월 31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2일

라. 상정일자 : 2022년 11월 23일

-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 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조덕진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사유

- 충청북도의 인재 양성 및 평생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확대를 위해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법인인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함에 따라 그 주요 사업, 명칭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 변경(안 제명)
  - 제명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로 변경
- 목적 및 주요사업에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신설(안 제1조, 제4조)
- 진흥원 설립의 근거 법령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안 제2조)
- 기존 사무국을 폐지하고, 진흥원의 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6조)
-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7조)
  - 종전의 “기금”을 그 성격에 따라 “재산 및 기금”으로 구분
- 종전부터 구성되어 온 “기금”은 “장학 및 인재양성사업”에만 사용하도록 명시(안 제9조)
- 조례와 정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16조)

## 3. 검토보고 요지 (김대진 수석전문위원)

### 가. 제출배경

- 본 개정안은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 추진에 따라 주요 사업, 명칭 및 조직 등을 정비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나. 주요내용 검토

- 제명은 그 법령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법령의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며, 법령의 성격이나 특성을 잘 나타내도록 알기 쉽게 이름을 지어야 하는 바, 개정안의 제명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조례안은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의 통합으로 설립되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 충북인재양성재단 목적 및 주요사업에 더해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신설(안 제1조, 제4조)하고, 진흥원 설립의 근거 법령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추가(안 제2조)하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안 제9조)은 충북인재양성재단에서 장학금 지급을 위해 조성된 기금을 평생교육진흥원과 통합되더라도 당초 기금의 목적에 맞게 “진흥원의 기금은 장학 및 인재양성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 종합 검토의견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청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통합됨에 따라 그 주요 사업, 명칭 및 조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됨.
- 조례개정을 통해 통합법인으로 출범하는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추진 체계가 안정화 되고, 도민의 역량증진과 삶의 질이 높아져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를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재단”을 “지역 우수 인재 발굴·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법인격)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를 “진흥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충북인재양성”을 “충북인재평생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종전의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5.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조사·컨설팅
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8. 문해교육센터 운영
9.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제5조 중 “재단”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사무국의 설치)”를 “(조직 및 운영)”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 ② 원장은 진흥원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③ 진흥원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⑤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재산 및 기금의 조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을 “진흥원”으로, “기금”을 “재산 및 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출연금”을 “기부금”으로 한다.

제8조 중 “재단의 기금조성”을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조성”으로,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진흥원의 기금은 장학 및 인재양성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0조(종전의 제9조) 중 “재단”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 중 “재단”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재단”을 “진흥원”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단”을 각각 “진흥원”으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을 “진흥원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의 제목 “(재단에 대한 제재)”를 “(진흥원에 대한 제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단”을 “진흥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조례에 위반하여”를 “이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 및”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시행규칙)”을 “(운영규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 충북인재양성재단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본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u></p>	<p><u>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우수 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지역 우수 인재 발굴·양성 및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u> ----- -----.</p>
<p>제2조(법인격 및 명칭) 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u>재단법인으로 한다.</u></p> <p>② 명칭은 재단법인 <u>충북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u></p>	<p>제2조(법인격) <u>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u></p>
<p>제3조(등기) ①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u>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u></p> <p>② <u>재단의 등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제3조(등기) ① <u>진흥원-----</u> ----- -----.</p> <p>② <u>진흥원의 -----</u> ----- -----.</p>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충북인재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2. ~ 4. (생략)
5. 정부기관 또는 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신설>

<신설>

<신설>

<신설>

6. 기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임원 등) 재단의 임원은 이 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  
-----  
-----.

1. 충북인재평생교육 -----  
-----
2. ~ 4. (현행과 같음)
5.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6.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조사·컨설팅
7.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8. 문해교육센터 운영
9.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임·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

제5조(임원 등) 진흥원-----  
-----  
-----  
-----  
-----.

제6조(조직 및 운영) 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제7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생 략)
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 3.·4. (생 략)

제8조(출연) 도지사·시장·군수는 재단의 기금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정관의 변경 등) 정관의 변경 등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

② 원장은 진흥원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진흥원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⑤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재산 및 기금의 조성) 진흥원----- 재산 및 기금-----.

1. (현행과 같음)
2. ----- 기부금
- 3.·4. (현행과 같음)

제8조(출연) ----- -- 진흥원의 재산 및 기금의 조성-- 범위----- --.

제10조(정관의 변경 등) ----- --- 진흥원-----

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  
를 경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  
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1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  
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  
어야 한다.

제12조(결산서 제출 등) ① 재단  
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  
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실적 및  
결산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을 통하여 도민에게 공개한다.

제13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재  
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

-----  
-----  
-----.

제9조(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진흥원의 기금은 장학 및 인재  
양성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사  
용할 수 없다.

제11조(회계연도) 진흥원-----  
-----.

제12조(사업계획 승인 등) 진흥원

-----  
-----  
-----  
-----  
-----  
-----  
-----.

제13조(결산서 제출 등) ① 진흥  
원-----

-----  
-----  
-----.

② 진흥원-----

-----  
-----.

제14조(지도감독) ① ----- 진  
흥원 운영과 관련하여 진흥원---

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14조(재단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재단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때

2. 3. (생략)

제15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  
진흥원-----  
-----  
-----  
-----.

1. ----- 이 조례를 위반하여 재산 및 -----

2. 3.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와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 관련법령 발취

###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慈善)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 3의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
5. 국가 및 시·군·구 간 협력·연계
6.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하 "시·도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진흥원은 법 제20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시설, 지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충북인재양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1. 사업개요

- 충북인재양성재단과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하고 명칭을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여 충청북도 인재양성 및 평생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을 확대하기 위함
- 이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수행 규정 신설, 진흥원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일부 개정

## 2. 비용 발생 요인

-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과의 통합에 따른 조직 신설 및 사업확장에 따라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증액

## 3. 관련조문

- 안 제4조(사업)
- 안 제6조(조직 및 운영)

## 4.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3~2027년(5년간)
-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 : 충북인재양성재단 출연금(연간 710백만원)
- 사무이관에 따라 이전되는 비용 : 충북평생교육진흥원 운영비(연간 786백만원)
- 재정수반 요인
  - 인건비 : 7,319백만원(22명 기준)
  - 운영비 : 2,677백만원
  - 사업비 : 9,029백만원
  - 임대료 : 470백만원
- 인건비는 임기제 공무원의 90% 임금을 적용함(현재 80%)
- 평생교육사업은 최근 사업 실적 및 타 시도 사업을 참고하여 산출함
- 시설 임대료는 청주권 건물을 임대하는 것으로 가정함

### 나. 추계 결과

- 산출과정(1년간)
  - 글로벌 해외연수(30명) : 180,000천원
  - 장학금 지원(수도권, 도내대학) : 2개사업, 224,000천원
  - 충북인재평생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 30,000천원

-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 : 15개사업, 999,000천원
-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조사·컨설팅 : 3개사업, 80,000천원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역량강화 지원 : 2개 사업, 70,000천원
- 문해교육센터 운영 : 50,000천원
- 직원급여(퇴직금, 성과급 포함) : 22명×639,930천원=1,406,461천원
- 시설 임대료 : 7,000천원 × 12개월 = 84,000천원, 보증금 50,000천원
- 운영비(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자산취득비 등) : 612,815천원

○ 산출결과 : 2023년부터 향후 5년간 12,021,185천원 소요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합계
세입						
세출	2,270,294	2,228,608	2,373,300	2,504,566	2,644,417	12,021,185
총소요비용	3,766,276	3,724,590	3,863,282	4,000,548	4,140,399	19,495,095
인건비	1,406,461	1,434,590	1,463,282	1,492,548	1,522,399	7,319,280
운영비	612,815	502,000	512,000	520,000	530,000	2,676,815
사업비	1,613,000	1,704,000	1,804,000	1,904,000	2,004,000	9,029,000
임대료	134,000	84,000	84,000	84,000	84,000	470,000
기(既) 발생비용	1,495,982	1,495,982	1,495,982	1,495,982	1,495,982	7,479,910
인재양성재단 출연금	710,000	710,000	710,000	710,000	710,000	3,550,000
이관사무(평생교육 진흥원운영비)	785,982	785,982	785,982	785,982	785,982	3,929,910
재원조달	2,270,294	2,228,608	2,373,300	2,504,566	2,644,417	12,021,185
의존재원						
소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계	2,270,294	2,228,608	2,373,300	2,504,566	2,644,417	12,021,185
지방세	2,270,294	2,228,608	2,373,300	2,504,566	2,644,417	12,021,185
세외수입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

### 6. 작성자 :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 조병철